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 감축을 도모하고 군민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지원 및 신청절차 정비 (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)

-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,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및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전자정부법」,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〔주민복지과 - 44257(2018. 8.10.)〕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8. 8. 23.~2018. 9. 12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등 우리군 인구 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의 지원 신청과 그 절차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신청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,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업무 담당자가 직접 행정시스템으로 확인 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 신청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